**준법 03-03-00 뇌물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

제정 2014-07-08

# (목적)

이 규정은 윤리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뇌물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의 개념 및 범위)

이 규정에서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자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3.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4. 공직선거 입후보자
5. 기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외국공무원의 개념 및 범위)

## 이 규정에서 “외국공무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1.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
	2.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뇌물의 개념)

## 이 규정에서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을 비롯하여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항에서 정한 뇌물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상품권, 유가증권
2. 여행, 음식과 술, 운동(골프 등), 도박에서 져주기 등의 접대
3. 숙박이나 교통 편의 제공
4. 취업 알선
5. 장래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의 부당한 분양 등 투자기회 제공

# (뇌물 제공 등의 금지)

## 임직원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에게 업무(사업 기회의 획득, 특혜 요청 또는 불이익 처분의 완화, 면제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와 관련하여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이 외국공무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과 대한민국 법령 및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대리인 등을 통한 뇌물 제공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나 컨설턴트(이하 “업무 등”이라 함)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대리인 등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 등을 선임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신고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협의)

## 임직원은 이 규정의 의미, 해석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허용·금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규범 주관부서에 문의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 주관부서”란 윤리규범 및 그 세부규정에 관한 문의사항 처리와 전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대표이사는 윤리규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임직원들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한다)를 말한다.

부칙 (2014-07-08)

* + - 1. 이 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